

근로자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조약 및 권고의 고찰(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염 용 태

1. 근로자 보건에 관한 국가, 사업주 및 근로자 책임관계

옛부터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관심을 둔 것은 민족보존, 군사력 유지, 노동력 확보 등 때문이었지 국민의 건강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 그러나 1984년 국제연합의 기본 인권선언과 더불어 복지국가 지향추세가 세계적인 새 바람을 일으키자 “국민은 누구나 다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헌법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프랑스, 일본 등). 국민보건을 개인의 능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보전에 대한 정치이념은 비단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들 뿐 아니라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들에게까지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제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정의사회와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대전제 아래 헌법을 개정 하였으나 보건에 관하여는 헌법 제 34조 2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만 규정하고 국가가 보장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지 못한 것은 과거의 헌법 조항으로부터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보건문제를 보장하지는 않아도 보호할 의무는 이미 헌법에 명시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보건문제에 대한 보호의무도 당연히 국가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법규를 보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처음 법제화된 것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다. 그러나 이 법만으로는 산업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981년 이 법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당시만 하여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복지문제는 산업화 과정에서의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넘겨 버렸다.

그러나 제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1988년 사회문제로 부각된 수은중독 집단발생, 이황화탄소 중독문제 등을 계기로 근로자 건강문제가 6공화국의 정치쟁점으로 부각함에 따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법률 제 4220호(1990. 1. 13)로 개정공포하면서 선진국형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었다. 즉 정부의 책임과 의무(제4조)는 물론 근로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사업주의 보건상 조

치의무를 확대하였다.

이상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제노동기구조약들에 명시된 책임을 국가, 사업주, 근로자 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 해당조약 뒤에 □내에 소개한 것은 1990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중 관련된 법규이다.

1) 국가의 책임

국제노동기구조약은 모두가 회원국(정부)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거의 예외없이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모든 조약에서 처음에 (2-3조) “본 조약이 시행되는 각 가맹국은 다음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등으로 명시하고 예외의 경우를 명시하되 예외가 되는 이유, 향후대책등 근거를 사무국에 제출하는 년차보고에 진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재확인 하는 조약의 조문에서는 이를 다시 명시하였다.

예를 들면

(1) 가맹국은 본 조약의 준수 의무를 책임질 사람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의 적용 여부를 감시하거나 준수되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벤젠조약 : 136호, '71 14조)

(2) 가맹국은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통제되어야 하는 발암물질 및 약품을 최근의 정보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해야 한다.

(암조약 : 139호, '74, 1조)

(3) 가맹국은 본 조약의 적용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제공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암조약 : 139호, '74. 6조)

(4) 가맹국은 의학적으로 유해판정된 근로자를 작업전환 또는 사회보장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작업환경조약 : 148호, '77. 11조 3항)

(5) 가맹국은 고용주단체,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하에 산업안전, 산업보건, 작업환경에 관한 일괄적 국가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및 보건조약 : 155호, '81. 4조)

(6) 국가는 적절한 감시제도의 실시와 함께 그 시행이 보장되도록 하며 위반시의 형벌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상기조약 7조)

(7) 국가는 모든 기계에 대하여 근로자를 상하게 하는 위험의 유무와 위험의 정도를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기계방호조약 : 119호, '63. 1조)

(8) 가맹국은 피보호자에게 우발적 사고시 치료적 성격 및 예방적 성격의 의료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 및 질병급부에 관한 조약, 130호, '69. 8조) 피보호자란 피고용인 및 그의 아내 및 자녀 또는...

(10조)

(9) 소관당국은 위험기준을 정하고 노출한계를 정할때 관련된 고용주단체 및 근로자 단체가 지정한 기술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환경조약, 148호, '77. 8조)

(10) 가맹국은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장 또는 공정의 설계시 기술적인 조치를 적용하거나 보충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조약 : 148호, '77. 9조)

第 4 條(政府의 責務) ①政府는 第 1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責務를 진다.

1. 産業安全保健政策의 수립·執行·調整 및 統制에 관한 사항
2. 災害多發 事業場에 대한 災害豫防의 지원 및 指導에 관한 사항
3. 安全·保健에 관한 機械·器具 및 設備등의 安全性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有害 또는 위험한 機械·器具·設備 및 物質 등에 대한 安全·保健上의 措置基準의 작성

포장에 다음各號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名稱
2. 成分 및 含有量
3. 人體에 미치는 영향
4. 貯藏 또는 취급상의 注意事項 및 緊急防災 要領

3) 근로자의 책임

- (1) 모든 근로자는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받아야 한다. (직업위생조약 : 161호 '85. 13조)
- (2)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절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방호조약 : 115호, '60. 13조)
- (3) 근로자는 방호조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떤기계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사용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기계방호조약 : 119호, '63. 11조)
- (4) 벤젠취급자는 취업전 및 정기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벤젠조약 : 136호, '71. 9조)

第6條(勤勞者の 義務) 勤勞者は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基準을 준수하여야 하며, 事業主 기타 關聯團體에서 실시하는 産業災害의 방지에 관한 措置에 따라야 한다.

第25條(勤勞者の 준수사항) 勤勞者は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행한 措置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산업위생업무 담당자의 책임

- (1) 산업위생업무 담당자는 명시된 기능에 대하여 고용주, 근로자 및 그 대표로부터 완전한 직업상의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직업위생조약 : 161, '85. 10조)
- (2)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상의 위험요인을 직업위생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담당자의 알 권리). (동조약 14조)

- (3) 모든 위생관리조직은 그 기관이 속한 경영자나 단체에게 그 활동을 책임지는 의사의 지시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업장 위생관리 업무권고 : 112호, '59. 13조)
- (4) 위의 의사는 사용자와 근로자부터 완전한 직업적 윤리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관련 당사자 또는 그 단체간의 협약은 산업의사의 고용조건, 특히 그 임용과 고용의 종료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동 권고 15).
- (5) 위의 의사는 직업위생에 관한 특별훈련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그 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규제하는 법령은 물론 산업위생, 특별응급처치, 직업병리학 등에 정통하여야 한다(동 권고 16).
- (6) 모든 근로자와 그 단체는 위생관리조직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동 권고 22).

第13條(安全保健管理責任者) ①事業主는 다음各號의 業務를 總括·管理하게 하기 위하여 安全保健管理責任者(이하 “管理責任者”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産業災害豫防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の 安全·保健教育에 관한 사항
4.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의 測定 등 作業環境의 點檢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の 健康診斷 등 健康管理에 관한 사항
6. 産業災害의 原因調査 및 再發防止對策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産業災害에 관한 統計의 記錄·유지에 관한 사항
8. 安全·保健에 관련되는 安全裝置 및 保護具 購入時의 適格品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第4章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有害·危險豫防措置에 관한 사항으로서 勞動部 令이 정하는 사항

※ 500만원이하의 벌금

②管理責任者는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를 指揮·監督한다.

③管理責任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模 및 産業保健醫의 資格·職務·權限·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産業保健醫의 選任등) ①법 제17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保健醫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事業으로서 의사가 아닌 保健관리자를 두는 事業장으로 한다. 다만, 建設業의 경우와 제19조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관리대행기관에 保健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産業保健醫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産業保健醫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産業保健醫는 당해 事業의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이상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産業保健醫의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17條(産業保健醫) ①事業主는 勤勞者의 健康管理 기타 保健管理者의 業務를 指導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産業保健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醫師인 保健管理者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産業保健醫를 두어야 할 事業의 種類·規

기 고

사업장 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실태 및 인식도 조사

마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과
황소민, 현정현, 현원일

1. 조사목적 및 보건관리대행 실태 현황

본 마산산업보건센터는 노동부 산업보건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91년도부터 시행된 보건관리

대행업무를 되돌아 보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